

『자동차 전자모듈 기억소거 방지장치 및  
배터리 성능 Taster 제품개발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0. 6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문의처

전무이사 김헌배 Tel: 010-5013-6518

## 용역 개요

### 1. 용역명 : 「자동차 전자모듈 기억소거 방지장치 및 배터리 성능 Tester 제품개발 용역」

### 2. 제품개발 목적

자동차정비 시 Battery cable(Power source) 분리에 따른 ECU(electronic control unit) 및 기타 데이터 저장장치들의 기억 소거로 인하여 엔진 시동 불량 및 보조장치 재설정 또는 초기화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LED 작업등, 자동차 전자모듈 기억 소거 방지장치 및 배터리 성능 Tester 등 휴대가 간편하고 현장에서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의 제품개발

- 과업수행 자격
  - 자동차 관련 제품개발 실적 2건 이상 자(개인 또는 법인)
- 과업 공동이행 여부
  - 당해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이행(공동수급) 가능함

### 3. 과업 내용

#### 가. 제품개발 필요성

- 최근 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의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모듈에 운전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장품 제어를 위한 제어기의 데이터 기록유지, 주기적인 상태 점검, 통신 상태 확인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가 Key-Off 된 상태에서도 각각의 모듈장치에 전원을 계속 공급하도록 제작 출고되고 있음
- 그 결과 전류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엔진 시동성 및 배터리의 수명에는 유리하나, 각종 전자모듈에서 소비되는 암전류(Key-Off 시 소비되는 전류)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배터리 교환 주기가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배터리의 노후화 또는 차량수리를 위하여 배선분리 및 배터리를 교환하는 작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차량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전자모듈의 설정값이 소거되었을 때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전자모듈의 상태를 재설정해야 함
- 이는 전자모듈이 작업 전에 이미 설정된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으며 기설정된 값을 기억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감과 함께 많은 정비시간이 소모되어 고객의 비용부담과 불만으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터리 교체 시 전원 분리 전에 ECU 및 기타 데이터 저장장치에 전원을 지속적 공급함으로써 데이터 기록을 유지 시켜 원가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LED 작업등, 자동차 기억 소거 방지장치 및 배터리 성능 Tester 등 휴대가 간편하고 현장에서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정비공장의 구매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나. 세부 제품개발 목표

- 본 용역의 목표는 “전자모듈 보조 전원 공급장치”, “배터리 성능 Tester”, “고휘도 LED 작업등” 및 “2차전지 내장 충전시스템” 등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의 개발에 있음

〈표1〉 세부 기술개발 목표

세부 기술개발 목표	기 능
(1) 전자모듈 보조 전원 공급장치	◆ 기억 소거 방지 ◆ 배터리 본선 단락 방지장치 포함
(2) 배터리 성능 Tester	◆ 배터리의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
(3) 고휘도 LED 작업등	◆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작업등
(4) 2차전지 내장 충전시스템	◆ 내부에 2차전지를 내장한 충전

#### (1) 전자모듈 보조 전원 공급장치

차량의 수리 또는 배터리 교환을 위하여 배터리 탈거 시 배터리 전원케이블 혹은 OBD 진단 커넥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모듈에 전원을 공급하여 기억 소거를 방지하는 장치

- 배터리 본선 단락 방지장치 포함

## (2) 배터리 성능 Tester

배터리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정비 생산성 및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장치

- 성능 테스트 후 교환으로 판단되면 성능 테스터기에 내장된 2차 전지를 이용하여 전자모듈 기억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배터리를 분리하여 기억 소거를 방지하여야 함

※ 배터리 용량 300A까지, 비중점검/CCA테스트/내부저항 측정이 가능해야 함

## (3) 고효율 LED 작업등

장시간 사용될 수 있는 작업등 개발

- 고효율 LED 칩과 고성능 배터리를 이용하여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작업등 개발
- 최대전류 1A(LED광원 기준)으로 설계하여 1회 충전으로 밝기에 따라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4) 2차전지 내장 충전 시스템

1회 충전으로 10시간 이상 사용 가능토록 개발하고, 작업 및 휴대 편의성 추가

- 내부 2차전지를 내장한 방식을 적용하여 12V, 10A급 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1회 충전으로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충전 방식은 AC 220V Adepter 충전 방식을 적용하여 유선 타입과 무선 타입으로 개발하여야 함
- 외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야 함

다. 추정가격 : 46,400,000원(부가세 미포함)

- 인건비(33,500,000원) : 제품개발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 2명(책임 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 부대 제품개발비(12,900,000원) : 검수비, 시제품인증비, 재료비, 출원료, 3D 모델링비, 하드웨어제작비, 인쇄비 항목으로 구성

#### 라. 과업 인력의 준비 및 용역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조합에 제품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서 제출 시 제품개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품개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마. 과업기간 : 용역 계약일 ~ 2020. 11. 10.

#### 바. 과업수행 인력

- 책임연구원 : 자동차 관련 제품개발 실적 2건 이상 자(개인)
- 연구원 : 자동차 관련 제품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1건 이상 자(개인)

## 1. 제품개발 용역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 제품개발 참여자는 본 제품개발에 신의와 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하며, 제품개발 후 1년간 개발된 제품에 대한 하자보완 요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제품개발 과정에서 얻게된 정보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제품개발 책임자는 제품개발을 위해 계약 당시 제출한 일정을 참고하여 「제품개발일지」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개발자는 용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일정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개발비 중 부대 제품개발비는 제품개발자가 기획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의 체크카드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없다.
- 조합과 본 제품개발 용역을 체결한 자는 3일 이내에 착수계와 제품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발해야 한다
- 기타 제품개발자가 준수할 사항은 용역계약서에 따른다.

## 2. 조합의 준수사항

- 조합은 제품개발자의 합리적인 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조합은 제품개발자가 용역비 중 인건비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개발 결과가 조합이 제시한 과업지시서, 당초 제품개발자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제품개발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완을 명한 후 보완 내용에 따라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 벌칙

#### 가. 벌칙의 범위

- 주의
  - 당초 제출한 용역 수행일정보다 진도가 지체된 경우
  - 용역의 주요 세부내용을 위반한 경우
- 경고
  - 사전 동의 없이 용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조합이 지정하는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 경우
  - 해당 월에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계약의 해지 등

- 벌칙의 범위 중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 월1회 : 주의
  - 월2회 : 경고
  - 월3회 이상 : 경고 및 해당 월의 용역비에서 배상금 상당액 공제

※ 상기 횟수는 각 월별로 판단하되, 해당 월에 주의 사유가 2회 이상 누적되어 경고로 간주되는 경우 계약해지권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괄하여 경고 1회로 함
- 벌칙의 범위 중 “경고”에 해당되는 사항 발생 시
  - 1회 : 경고
  - 2회 : 경고 및 해당 월의 용역비에서 배상금 상당액 공제
  - 3회 이상 : 계약해지권 발생 또는 해당 월의 용역비에서 배상금 상당액 공제
- 주의 및 경고 건수는 해당 용역 완료 시까지 적용된다.
- 용역책임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을 신청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해지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용역책임자는 원활한 용역을 지속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해지 시 조합은 용역책임자에 대해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킨다.

#### 다. 손해 배상 책임(배상금)

- 위 가항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합의 제품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위 나항에 따라 해당 월의 용역비에서 공제 가능한 배상금은 별칙의 범위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1회당 월 용역비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 또한, 배상금 발생 시 비용은 용역비 지급 시 정산한다.
- 조합의 제품개발에 지장이 발생하여 제3자가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용역책임자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처분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III 용역비

#### 1. 용역비 산출기준

##### 가. 인건비

- 제품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개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 지급 대상자 : 책임연구원 1명 및 연구원 1명
  - 인건비는 33,500,000원 한도 내에서 책정
  - 책정기준 : 2020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19)	월 임금('20)
책임연구원	월 3,216,863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66,647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48,871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36,695원	월 1,241,64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 증감 가능

##### 나. 부대 제품개발비

-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으로 다음 항목에 한한다.
  - 지급 대상 항목 : 시제품인증비, 재료비, 출원료, 3D 모델링비, 하드웨어제작비, 인쇄비
  - 부대 제품개발비는 12,900,000원 한도 내에서 책정

다.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용역비 지급절차

- 제품개발자가 제품개발완료보고서와 개발된 제품을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이 보고서의 적정성과 제품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및 중도 기성금은 조합이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로부터 해당 교부금을 수령한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품개발자는 조합이 구성한 개발제품심사위원회가 최종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비지급청구서 1부.
  - 용역결과보고서 1부.
  - 개발제품 샘플 10개.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청구된 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조합 내부 회계절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다.

## IV 제안서

### 1. 작성내용

구 분	주요 작성내용	비 고
I. 참 여 자 · 일 반 현 황	▷ 연구실적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연구실적 * 책임연구원(개발 책임자)와 연구원을 구분하여 기술	
	▷ 자동차 관련업 근무 경력 자동차 또는 자동차정비업체 경력 * 책임연구원(개발 책임자)와 연구원을 구분하여 기술	
II. 제 품 개 발 · 실 적	▷ 본 용역과 관련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개발 실적(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7년) * 책임연구원(개발 책임자)와 연구원을 구분하여 기술	
III. 용 역 수 행 · 방 법	▷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	
	▷ 용역과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제품 개발방법	
	▷ 개발제품의 성능향상 방법	
	▷ 제품개발 프로세스	
	▷ 시제품 검수, 인증 및 출원 방안 * 검수기관, 인증기관 및 출원할 지식재산권 명시	
	▷ 부대 제품개발비 사용 계획 * 금액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술	
IV. 용 역 수 행 · 프 로 세 스 · 및 · 관 리 계 획	▷ 제품개발 기획에서부터 완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일정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활동계획 기술	
	▷ 용역관리 일반사항, 진행일정 및 보고, 검토계획	
	▷ 참여자별 수행역할	
	▷ 용역기간 준수를 위한 방안	
	▷ 기타 발주 조합과의 협력 방안	
V. 기타 개발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 제품개발 이후 사후관리 방안	
	▷ 기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	

- ※ 제안서 작성은 위의 사항을 따르되 제안자의 현황 및 제안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추가 가능
-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 첨부

## 2. 제안서 작성 시 준수사항

-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제안자는 제안내용 중 참고자료나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별첨 자료로 첨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조합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본 조합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음
- 제출된 모든 자료의 내용에 대해 본 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본 조합은 계약체결 전까지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크기로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영문을 병기할 수 있음 (영문 약어 사용시,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1. 선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2. 입찰자격

- 자동차 관련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개발 실적이 있는 자(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10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부도, 회생, 법정관리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개인) 제외

## 3. 선정절차

- 제안요청 → 제안서 접수 → 평가 및 보완 → 계약

##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제안서 각 10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서식] 1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별지2호서식](VAT 포함, 밀봉 날인 후 제출) 1부.
  - 일반사항 및 연혁[별지3호서식] 1부.
  - 최근 10년간 본 용역과 관련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개발 실적 [별지4호서식] 및 유사사업수행실적[별지5호서식] 각 1부.
  -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6호서식] 각 1부.
  - 확약서[별지7호서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8호서식] 1부.
  -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별지9호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업체의 경우에 한함)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 조합에 납부
- 유의사항(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한다.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 최종평가는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실시한다.

##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만점기준 68점(85%) 이상인 업체에 한하며,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 할 수 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VI 평가항목 및 배점

### 1.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으로 배분 ·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68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부터 협상 실시 (단, 68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제공고 입찰)

###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기준
제품 개발 능력 평가 (80점)	I. 참여자 · 일반현황 (5점)	3 ▷ 연구실적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연구 실적	정성적 평가
		2 ▷ 자동차 관련업 근무 경력 자동차 또는 자동차정비업체 경력	
	II. 제품개발 · 실적 (10점)	10 ▷ 본 용역과 관련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개발 실적(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10년)	
	III. 용역수행 · 방법 (30점)	5 ▷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	
		5 ▷ 용역과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제품 개발방법	
		5 ▷ 개발제품의 성능향상 방법	
		5 ▷ 제품개발 프로세스	
		5 ▷ 시제품 검수, 인증 및 출원 방안	
		5 ▷ 부대 제품개발비 사용 계획	
	IV. 용역수행 · 프로세스 · 및 · 관리계획 (25점)	5 ▷ 제품개발 기획에서부터 완료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일정별, 단계별 활동계획	
		5 ▷ 용역관리 일반사항, 진행일정 및 보고, 검토계획	
		5 ▷ 참여자별 수행역할	
		5 ▷ 용역기간 준수를 위한 방안	
		5 ▷ 기타 발주 조합과의 협력 방안	
	V. 기타 개발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10점)	5 ▷ 제품개발 이후 사후관리 방안	
5 ▷ 기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			
소 계	80		
가격평가(20점)	20	입찰가격	별도 개찰·평가
합 계	100		

## VII 과제 이행조건

### 1.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본 조합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본 조합과 용역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조정할 수 있고, 용어해석·과업범위 등에 이견발생시 본 조합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용역수행자는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대한 추가제언 필요시 향후 1년간 지원계획을 용역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이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조합의 제반 규정 등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본 조합 이외의 자(국가기관 포함)로부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경우 본 조합에 통보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함

### 2. 용역 결과 관련 사항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사용(특허권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며, 조합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VIII 제출서류

### 【별지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 과 동일하게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개인인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전화번호 e-mail	
	주소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율 : 10/100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사용인감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①	
<p>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조합의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p> <p>*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입찰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p>				

## 【별지 2호 서식】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원/VAT미포함)
	용역완료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 (성 명)	<b>*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b>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i>개인인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i>		
<p>본인은 귀 조합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 되면 용역(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협상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입찰자 :      대표자명                      ①</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p>				

##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항목별	참여인력수	참여율	금 액	산출근거 등 (Man/Month)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인건비					
	연구원					
소 계				33,500		
부대 개발비	시제품인증비					
	재료비					
	출원료					
	3D 모델링비					
	하드웨어 제작비					
	인쇄비					
소 계				12,900		
합 계						

### 【별지 3호 서식】 제안사 일반사항 및 연혁

※ 개인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사업내역			
주요실적			
<u>주요연혁</u>			

※ 주요 실적은 본 과업과 유사분야 실적만 표기

## 【별지 4호 서식】 제품개발실적증명서

제 품 개 발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성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경기도자동차정비 공업협동조합	
	제품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제품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사업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사업 수행실적 중 공시자료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② 제품개발 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 되는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제품개발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지 5호 서식】 유사 제품개발실적

유사제품 개발 실적						
순번	사업명	제품개요	사업기간	실적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참고)

- ① 용역 계약일이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② 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이라함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 제품 개발” 임을 반드시 기재 후 발주처의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④ 해당분야 이 외의 실적은 본 양식에 기재하지 말 것

## 【별지 6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 용역 참여인력(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최종출신학교명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개월	
주요 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최근 7년간 유사분야 용역만 기재							

#### ※ 유의사항

-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마감일 전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재직증명서 첨부 요망)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별지 7호 서식】 확약서

### 확 약 서

- 입찰건명 : 자동차 전자모듈 기억소거 방지장치 및 배터리 성능 Taster 제품개발 용역

본 신청인은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담당 임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2호)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 【별지9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 개인정보보호 보안특약서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자동차 전자모듈 기억소거 방지장치 및 배터리 성능 Taster 제품개발 용역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하여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자 : \_\_\_\_\_ (이하“을”)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을”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을”은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기업 기본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등)
- ② 기업 현황(매출액, 임직원 수, 인사제도 현황 등)
- ③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 관련 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특약을 통해 발생된 특약상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당 재위탁받은 업체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재위탁 받은 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을”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을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특약기간은 물론 특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특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특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개인정보 보호 분임책임자는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는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이 특약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전항의 특약기간은 업무별 위탁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직인)

\_\_\_\_\_ (직인)